

## 화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

### 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5. 6. 화순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05. 6. 15

다. 상정일자 : 2005. 7. 4

(제131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산업·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)

### 2. 제안 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 :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태

나. 제안사유

- 재난·재해에 관한 소관부서가 건설과에서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됨으로써 관련규정을 개정하기 위함.

다. 주요내용

○ 담당자 변경

- 기존 자문단의 간사(건설과장)와 서기(재난방재담당)가 각각 재난안전관리과장과 재난관리담당으로 변경

○ 관련근거 :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

#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조석호)

- 행정기구 개편에 의하여 기존 건설과에서 관장하던 업무 일부가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됨에 따라 담당 부서장 등의 명칭을 변경하는 개정조례로서 당연 개정 사항임.

### 4. 질의 답변요지

“생략”

### 5. 토론요지

“생략”

### 6. 심사결과

“원안 의결”

### 7. 불임 : 화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

## 화순군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화순군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중 “건설과장”은 “재난안전관리과장”으로, “재난방재담당”은 “재난관리담당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간사와 서기)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, 간사는 <u>건설과장</u> 이 되고 서기는 <u>재난방재담당</u> 이 된다.	제12조(간사와 서기)..... ..... ..... <u>재난안전관리과장</u> ..... <u>재난관리담당</u> .....